

■ 법률 칼럼

# 영주권 신청 시 재정보증의 중요성

## 1. 재정보증의 개요 및 중요성 증대 이유

지난 몇 년 동안 가족 초청(결혼을 통한 초청 포함)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경우에 재정보증(I-864)이 가장 중요한 요건 (requirement)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이란 영주권 신청 시에 통상적으로 초청자(Immigration Petitioner)가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만약 특별한 사정(보통 건강상의 문제)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보통 병원비)을 받게 되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이 보증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이 재정보증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재정보증 서류를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민 절차에서 취급했었습니다. 친이민적인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기는 했지만 미국 여론이 비이민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영주권 신청 시에 재정보증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2. 재정 보증의 구체적 내용(자격 요건, 보증 기간 등)

이 재정 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I-864)이란 영주권 스폰서와 미 연방정부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영주권 스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스폰서가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서 영주권 신청자가 공적인 정부 지원금(public charge)을 받게 될 경우 연방정부는 소송을 통해서 이 지출된 지원금을 보전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 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3) 입정액 이상의 연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극빈자 소득의 125%의 연간 소득이 요구됩니다).

스폰서의 재정 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면, 스폰서는 이민국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 W-2 그리고 Paystub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재직증명서까지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폰서의 재정보증 소득이 부족한 경우는 소득이 충분한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이 스폰서와 함께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재정보증을 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한 경우(joint tax return), 보증을 서는 분의 배우자의 동의 양식(I-864 A)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얼마 동안 이 재정보증의 의무가 지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폰서는 약 10년 동안 재정 보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하고 10년 안에 영주권 신청자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연방정부는 스폰서에게 이 재정 지원에 대한 보증을 법적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은 영주권자의 40분기 세금 보고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재정보증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상실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 당뇨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상식



## ■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당뇨 자체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질환 특성상 장기간 치료와 평생 관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식단 변화나 정기적인 운동 등의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서 관리가 잘 된다면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 ■ 인슐린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평생 써야 한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생성 자체가 결국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하지만, 제일 흔한 당뇨병인 2형 당뇨병에서는 질병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생활습관 교정이 잘 되는 경우 인슐린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 인슐린 때문에 당뇨합병증이 심해졌다?

많이 환자분들이 인슐린을 쓰고 나서 당뇨가 심해지고, 당뇨합병증이 왔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인슐린 주사는 대부분 당수치가 아주 높거나 일반 경구약으로 잘 조절이 안되는 경우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시작할 때는 이미 당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뇨합병증이 흔하게 오는 것이지 인슐린을 사용한다고 당뇨가 더 나빠지

거나 부작용으로 당뇨합병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 ■ 감기에 걸려 감기약을 먹고 있을 때는 당뇨약을 안 먹는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당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약을 먹고 있을 때에도 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 ■ 과일은 많이 먹어도 된다?

과일도 많은 양의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량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착즙하거나 주스로 먹을 경우 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껍질째 통째로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Glycemic Index (혈당지수)라고 하여 혈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당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지수가 높은 과일에는 파인애플, 수박 등이 있고, 혈당지수가 낮은 과일은 사과, 오렌지, 베리류, 바나나, 배, 오렌지 등이 있습니다.

사진=shutterstock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